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의 이해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2019. 12.

공인노무사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CONTENT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4. Q&A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공무원직장협의회 개념

'공무원 직장협의회'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 운영하는 협의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 업무능률 향상 ·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무원 노조와는 그 성격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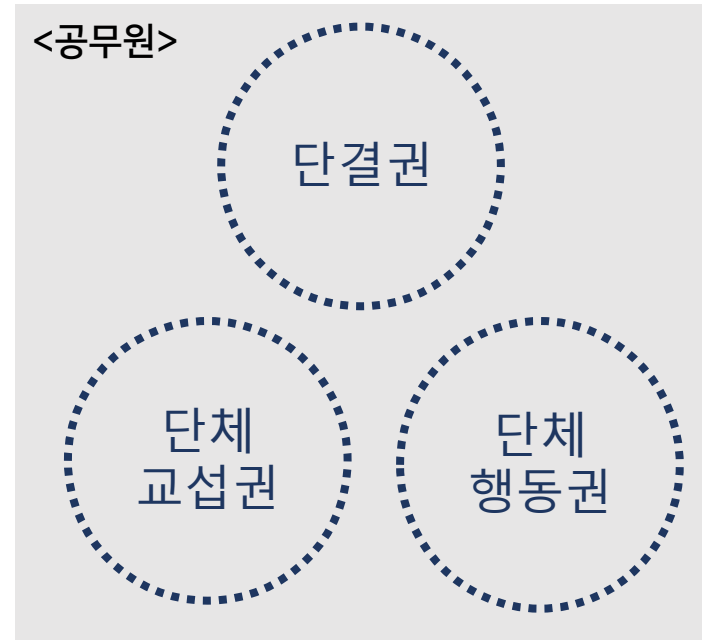
민간 영역에서 설립 · 운영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성격이 유사함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공무원직장협의회 논의의 연혁

헌법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공무원직장협의회 논의의 연혁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공무원직장협의회 논의의 연혁

1997년
IMF 사태에 따른
공무원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 요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허용

1998년
노사정위원회
'2.6.사회협약'
공무원노조
허용 합의

1999년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
시행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공무원 노동조합VS 공무원 직장협의회 성격비교

구 분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상 근거는 없음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은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헌법기관) ○ 지방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 ○ 둘 이상의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 해당기관의 장에게 설립 통보
가입범위 (현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가입 ○ 가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직. 정무직, 교원, 사실상노무종사 공무원 - 지휘. 감독직, 인사. 예산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자 - 교정 수사 등 유사업무 담당자,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담당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가입 ○ 가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직. 정무직,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 - 지휘. 감독직,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 기밀. 보안 업무 담당자

1.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요

공무원 노동조합VS 공무원직장협의회 성격비교

구분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 협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인정 - 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만가능 -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전임자	○ 전임 인정(무급휴직)	○ 전임 금지
사용자의 교섭의무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거부, 해태 등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기관장에게 매년 2회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부, 해태시 제재규정 없음
분쟁조정	○ 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위원회 설치	○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행정구제 절차에 따름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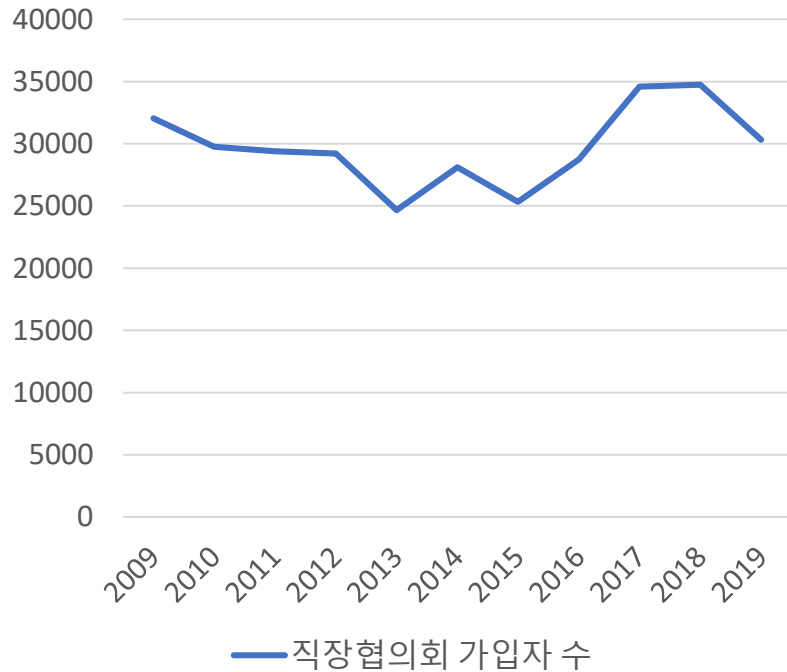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	▲▼≡	▲▼≡	▲▼≡	▲▼≡	▲▼≡
전체	직협	169	143	147	134	130	147	148	153	161	160	151
	가입자	32,035	29,743	29,400	29,219	24,654	28,098	25,319	28,715	34,604	34,754	30,334
헌법기관	직협	1	1	1	1	2	1	1	0	0	1	1
	가입자	150	130	134	138	461	144	150	0	0	47	57
중앙행정기관	직협	109	96	102	97	95	106	108	104	108	110	107
	가입자	8,131	8,440	8,754	8,380	7,629	8,269	7,897	7,221	7,483	7,597	7,184
광역자치단체	직협	5	5	5	2	4	6	4	6	6	6	6
	가입자	1,796	1,786	1,820	1,636	293	372	183	522	509	518	531
기초자치단체	직협	41	31	31	30	26	31	32	39	45	41	35
	가입자	20,676	18,489	18,491	19,021	16,159	19,206	17,042	20,672	26,459	26,378	22,221
지방교육청	직협	13	10	8	4	3	3	3	4	2	2	2
	가입자	1,282	898	201	44	112	107	47	300	153	214	341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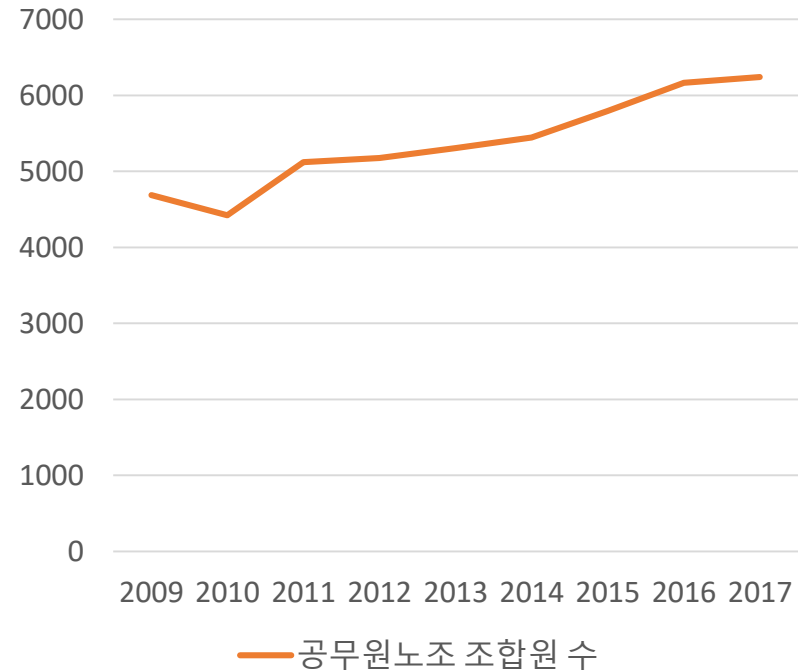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추세

직장협의회 가입자 수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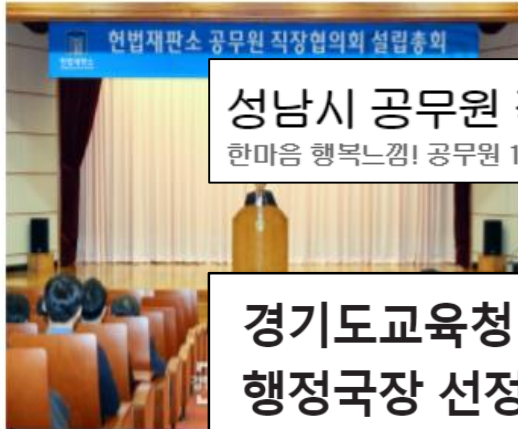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사례

경향신문

헌법재판소 개소 29년 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이법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7.05.01 17:16 | 수정 : 2017.05.01 18:21



성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동제”

한마음 행복느낌! 공무원 1300여명 참석... '영원한 친구가 되자'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베스트 간부 공무원에 행정국장 선정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에서 이윤성 회장이 직장협의회 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에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29년만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노동환경개선 등을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는 6급 이하 가입 대상 직원 가운데 80%가 가입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설립총회에는 김용현 헌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윤성 헌재 직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답게 기계실 관리자, 식당 조리원, 청사 미화원 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헌법기관, 시·군, 교육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중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사례

개정 전, 경찰 내부
직장협의회(직원협의회) 시범운영..

'3조 2교대 근무형태가 4조 2교대
형태로 변경하는 안' 검토

남·여 구분이 없어 여경들이 불편을
겪었던 화장실 시설은 곧바로 보수

중앙일보

전국 첫 경찰 직원협의회 탄생... 실험' 성공할까

[중앙일보] 입력 2017.09.14 11:30 수정 2017.09.14 11:39

"전국 처음이라 책임이 막중합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첫 경찰청 직원협의회인 울산지방경찰청(울산청) '고동소리' 회장을 맡은 송종후(49·마약수사대) 경위의 각오다.

울산지방경찰청 13일 직원협의회 '고동소리' 출범
직원 고충 처리 등 일반회사의 노조와 비슷한 역할
수사구조개혁단장 역임한 활운하 청장 주도로 구성

고동소리는 지난
13일 출범했다. 송진
등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고동소리는 활운하 울산청장의 의지로 탄생했다. 활 청장은 지난 8월 3일 취임하면서 "직장협의회 수준의 내부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반 만에 실행에 옮긴 셈이다.

직장협의회는 일반회사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같은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다. 활 청장은 이를 '노조 전 단계'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없다.

송 경위는 "고동소리의 성격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직장협의회와 같지만 아직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직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사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합의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

성남투데이[♠]

성남투데이 : <http://www.sntoday.com>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복리증진 한뜻'

기사입력시간 : 2011/07/16 [09:36:00]

한채훈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성직협)는 지난 14일 오후 4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민선 5기 단재장과 올해 상반기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웅 성직협 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성직협이 준비한 직원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안건 15건과 건의사항 5건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휴직자 대체인력 정규직 배치, 우수직원 포상우대 강화, 기능 및 청원경찰 사기진작, 성직협 인사위원추천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시장은“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상호간 신뢰를 쌓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줘 대시민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면서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전 공직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웅 성직협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통과 역할인정 노력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지난 5월 2일자 대규모 인사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날 성직협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695명 중 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24.6%(171명), 보통 59.7%(414명), 불만족 15.5%(108명), 무응답 0.3%(2명)으로 조사돼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약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협은 이달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격무부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성남시에 전달하고,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및 사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전환 사례



1999.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최초 설립(서울지법 본원)



2002.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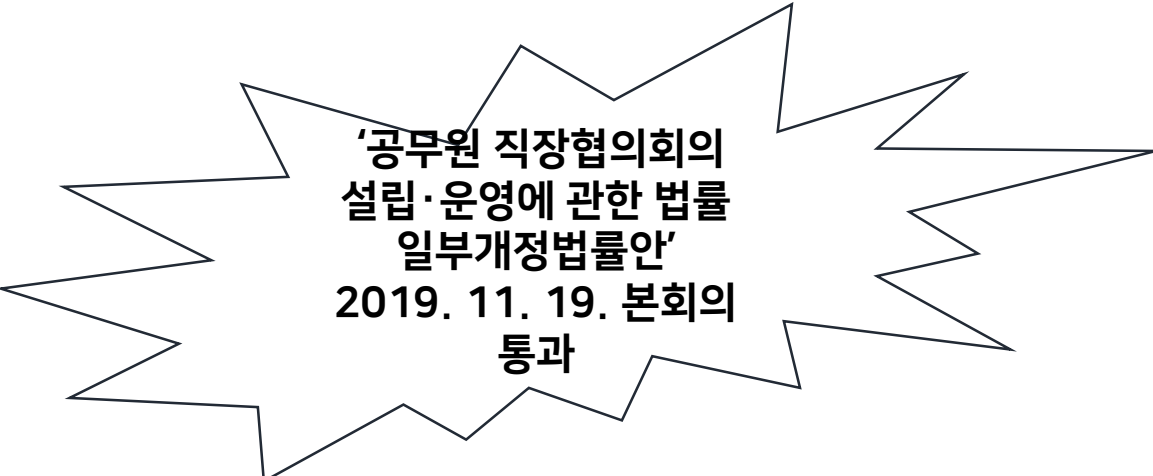
2004.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전국 20개 법원 직장협의회별로 '직협'의 '노조'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91%찬성)



2005.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설립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근거법률 개정(제안이유)



**'공무원 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19. 본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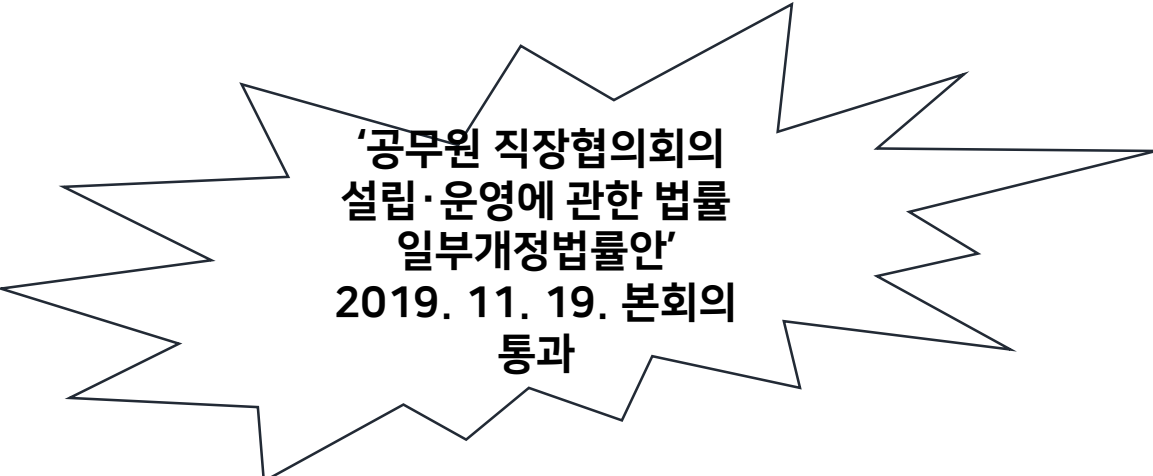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업무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근거법률 개정(주요내용)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19. 본회의
통과

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2호)

나.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 포함시킴(안 제3조 제2항 제3호)

다.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의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근거법률 개정(신규대조)

현행	개정안
<p>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u> <u>외무공무원</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3. ~ 5. (생략)</p>	<p>제3조(가입 범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u></p> <p><u>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u> <u>외무공무원</u></p> <p><u>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u></p> <p><u>다.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u></p> <p>3. ~ 5. (현행과 같음)</p>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치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차별성)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다름

○ (노사협의회와의 유사성)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단결체가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체라 할 수 있음

※ 노사협의회: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공동이익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설립단위

- (원칙) 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함(본부의 실, 국, 과, 담당관 등 보좌·보조기관 단위로는 설립할 수 없음)
- (설립단위 예외)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음
- (복수협의회 설립금지)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하여야 함. 즉, 한 개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음
-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음

공무원노동조합의 관련성

-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병존 가능(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에서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가능)
- 공무원노동조합 제17조제1항 '공무원노동조합의 규정은 공무원직장 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다만 소방공무원 내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



설립사실 통보



협의회 설립증 교부

- (설립총회 개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설립여부를 결정)
※ 기관장은 2개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 설립준비 대표자를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 (설립사실 통보)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협의회 설립증 교부)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무원직장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함
- (협의회 설립시기)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봄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가입범위

- (원칙) 1.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 (예외)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②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⑤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⑥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⑦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⑧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 하는 공무원~~ ⑨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공고)
 - 기관장
 - ※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해야 함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직장협의회 운영

- (협의회 규정)
 -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음
-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음
 - 다만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회원내부에 대한 내부통제)
 - 협의회는 그 조직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회원에게 일정한 규제 등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제권은 협의회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회원의 제명은 반드시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에서 처리하되, 회원 제명 시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의결전에 충분히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협의당사자(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5조)

- (기관측 당사자) 기관장이 직접 협의하여야 함.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협의회측 당사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협의함
-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 하되,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함.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함)
-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할 수 있음

협의절차(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8조)

- (원칙) 협의 요구권자인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함
- (협의종류)
 - 정기협의: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
 - 수시협의: 필요시 수시로 개최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협의사항 및 협의의 노력(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5조)

○ 협의사항

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 휴게실 및 흡연실 설치, OA사무실 설치, 통근버스 운영 등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결재과정 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감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

3)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당직부담의 경감, 대기성 근무지양, 경조비용의 합리화, 복장 자율화 등

※ 여기서 말하는 소속공무원의 고충은 업무와 관련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며, 순수하게 개인적인 고충은 국가공무원법 제 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고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결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간담회 수 시 개최, 동호인회 활성화 등

○ (협의 대상이 아닌 사항)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

협의의 효력(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9조)

○ (협의사항의 공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해야 하고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함

○ (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장의 의무(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6조)

- (협의의무)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불리한 조치금지 의무) 기관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의무) 협의회는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함
- (회의록 보존 의무) 기관장과 협의한 때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한 기관장·대표자·협의위원,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합의사항 이행 의무)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함 (노사협의회와 달리 합의사항 미이행 시 기관장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3.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한계

협의사항 제한

- 근무환경을 둘러싼 고충개선으로 한정
- 노동조건 등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함

미이행 시 제재근거 부재

- 성실히행의무만을 규정
- 협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 없음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 금지

-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활동 금지

4. 공무원 직장협의회 Q&A

자주하는 질의

Q.

동일기관내 지역을 달리하여 설치되어 있고,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서에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A.

○ 지리적으로 독립되어 위치하고 있고,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사용시 모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거나 사후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외적 형태보다는 내부적 독립관계로서 판단해야 하는 바, 별개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관내 소속된 부서로서 단지 외형적으로만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별개의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책임자가 4급 이상 공무원이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기관내 부서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 별도의 직장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4. 공무원 직장협의회 Q&A

자주하는 질의

Q. 기관장과의 협의시에 협의대상이 아닌, 인사사항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을 경우, 합의사항의 효력은?

A.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은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기술상 구체적 내용이 아닌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
-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편람상 '기관장의 고유사항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협의 대상으로 분류됨
-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직장협의회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협의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인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문서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비협의 대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

4. 공무원 직장협의회 Q&A

자주하는 질의

Q.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지

A.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법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노동 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가입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업무성격이 보안·기밀업무에 속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Q & A

감사합니다